###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6

제출연월일 : 2017. 09.

제 출 자: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 적용 불일 치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의무 부과한 조항 삭제(안 제5조 및 제8조)
- 나.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가산금 및 독촉 적용 불일치 정비(안 제26조 및 제27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 나. 「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32조까지
-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7년 07월 26일 ~ 08월 07일(13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관련 협의사항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9. 참고사항 : 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상하수과

하남시 조례 제 호

###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 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 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하수도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하수도과장 오세인			
	팀장 직위·성명	하수도관리팀장 전용신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전용신 (790-516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	<u>〈삭 제〉</u>				
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					
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					
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					
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					
<u>히 다를 때</u>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					
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하남시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					
<u>사용개시신고</u>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					
<u>치신고</u>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

-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 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 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 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 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 부과기준은 <u>「지방세</u>기본법」 제59조를 준용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 부과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은 <u>「지방세기본</u>법」 제61조를 준용한다.
  - ④ (생략)

제26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 [지방세
징수법」 제30조
②
<u>「지방세징수법」 제31조</u>
③
<u>제32</u> 조
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 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 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 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제97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

- 는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 1항을 준용한다.
-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 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 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